

17.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Grenadines)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보험료율(가입자/자영자/사용자)	4.5% / 9.5% / 5.5% (질병, 출산 재원 병행)	4.5% / 9.5% / 5.5% (질병, 출산 재원 병행)	-
연금수급 개시 연령	61세	62세	2028년까지 3년 마다 1년씩 체증하여 65세로 상향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550주	600주	2028년까지 3년마다 50주씩 체증하여 750주로 상향
노령연금 지급률 (최소가입기간 충족 시)	가입자 평균소득 30%	가입자 평균소득 30%	-
일시금	보험료 납부기간 50주 당 주 평균소득의 6배	보험료 납부기간 50주 당 주 평균소득의 6배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70년(적립기금)
- 현행법 : 1986년(사회보험, 1987년 시행)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 ※ 노령빈곤자, 장애인, 고아는 가족수당제도에 따라 사회부조 현금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근로자 및 자영자
 - 적용대상 근로에 있지 않거나 해외 거주하는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시민은 임의가입 가능

- 사회부조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빈곤층 거주자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주 또는 월 적용소득의 4.5%
 -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주 또는 월 적용소득의 4.29%
 - 임의가입자의 경우 5단계의 소득구간에 기초하여 신고소득의 8.84%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weekly) 소득 하한액 : 주당 EC\$15(월 EC\$6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weekly) 소득 상한액 : 주당 EC\$1,000(월 EC\$4,333)
-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 재원이기도 함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8단계 소득 구간에 기초하여 주 또는 월 기준소득의 9.5%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weekly) 기준소득 하한액 : 주당 EC\$120(월 EC\$52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weekly) 기준소득 상한액 : 주당 EC\$1,000(월 EC\$4,333)
-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 재원이기도 함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민간 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또는 월 임금지급총액의 5.5%
 -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5.25% 또는 5.50%
 - 16세 미만 또는 정상퇴직연령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0.5%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weekly) 소득 하한액 : 주당 EC\$15(월 EC\$60)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weekly) 소득 상한액 : 주당 EC\$1,000(월 EC\$4,333)
-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급여, 산재급여 재원이기도 함
- 사회부조 : 없음

○ 정부

- 사회보험 : 없음 ; 단, 사용자로서는 보험료 납부
- 사회부조 : 전체 비용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인정기간이 최소 600주(2028년까지 3년마다 50주씩 체증하여 750주로 상향) 이상인 62세(2028년까지 3년 마다 1년씩 체증하여 65세로 상향) 도달
- 가입자가 질병급여, 출산급여, 산재급여를 수급한 가입대상 기간으로 각 완성된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
- 부분연금 : 정상퇴직연령에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인정기간이 최소 500주 이상 600주(2028년까지 3년마다 50주씩 체증하여 750주로 상향) 미만인 경우. 단, 부분 연금은 2028년에 폐지 예정
- 조기연금 : 60세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인정기간이 600주(2028년까지 3년마다 50주씩 체증하여 750주로 상향) 이상
- 노령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단, 별도 수수료 적용 가능)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62세(2028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체증하여 65세로 상향) 도달하고, 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인정기간이 50주 이상 600주(2028년까지 3년마다 50주씩 체증하여 750주로 상향) 미만인 경우
 - 가입자가 질병급여, 출산급여, 산재급여를 수급한 가입대상 기간으로 각 완성된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
 - 노령일시금은 해외 지급 가능(단, 별도 수수료 적용 가능)
- 비기여노령부조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1987년 1월 5일 기준 57세 이상이고 그 전에 상당기간(특정기간이 정의되지 않음) 동안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현재는 보수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청구일 당시 최종 8년 중 최소 5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최소 25년 동안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거주자이어야 함
 - 소득조사 : 월소득 EC\$37.50 이하; 다른 소득원천으로부터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국가보험제도로부터도 연금을 받지 않아야 함
- 노령부조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1987년 1월 5일 기준 45세 이상이고 그 전에 상당기간(특정기간이 정의되지 않음) 동안 비정규적이거나 계절적 근로에서 계속적으로 고용되고 현재는 보수 고용되지 않은 경우 지급
 - 청구 직전 최종 5년 중 최소 4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최소 25년 동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거주자여야 함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 장애로 판정, 정상퇴직연령 미만
 - 장애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단, 별도 수수료 적용 가능)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50주 이상 150주 미만, 장애로 판정, 정상퇴직연령 미만
 - 장애일시금은 해외 지급 가능(단, 별도 수수료 적용 가능)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시점에 사회보험 노령/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혼인 또는 동거기간이 3년 이상인 배우자, 18세(전업학생인 경우 21세,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 피부양 고아자녀, 60세 이상 피부양 부모
 - 유족배우자연금은 재혼 또는 동거 시 중단됨
 - 유족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단, 별도 수수료 적용 가능)
- 유족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최소 50주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혼인 또는 동거기간이 3년 이상인 배우자, 18세(전업학생인 경우 21세,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 피부양 자녀 또는 60세 이상 피부양 부모
 - 장애일시금은 해외 지급 가능(단, 별도 수수료 적용 가능)
- 장제비(사회보험)
 - 가입자가 26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자/가입자의 배우자/가입자의 18세(전업학생인 경우 21세,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 피부양 자녀 사망 시 지급
- 장제비(사회부조)
 - 비기여노령연금 수급자,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의 18세(전업학생인 경우 21세,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미만 피부양 자녀 사망 시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30%에 보험료 납부기간 600주(2028년까지 3년마다 50주씩 체증하여 750주로 상향) 초과 25주당 연평균 소득의 0.5%씩 가산
 - 연 평균소득은 가입자가 정상퇴직연령 도달 전 전체 근로경력 중 최고소득 5년 동안의 가입자 적용소득에 기초함
 - 주당 연금액은 연간 금액을 52로 나누어 결정됨
 - 최저 노령연금액 : 주당 EC\$70
 - 최고 노령연금액 :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60%
 - 부분연금 : 연금액은 완전연금에 필요한 주 개수 만큼 비례하여 감액됨
 - 조기연금 : 연금액은 정상퇴직연령 전 연금 청구 1년당 6% 감액(월단위 0.5%)
 - 급여주기 : 국가보험위원회에서 지급 주기 결정(현재는 월단위 지급)
 - 급여조정 : 보험계리 심사를 조건으로, 3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 50주 당 가입자의 주 평균 가입소득의 6배씩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주 평균소득은 60세 도달 전 최종 50주 동안의 가입자 적용소득에 기초
- 비기여노령부조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2주 단위로 EC\$75 지급
- 노령부조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2주 단위로 EC\$75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30%에 보험료 납부기간 600주(2028년까지 3년마다 50주씩 체증하여 750주로 상향) 초과 25주당 연평균 소득의 0.5%씩 가산
 - 가입자가 질병급여, 출산급여, 산재급여를 수급한 가입대상 기간으로 각 완성된 주는 보험료 납부로 인정됨
 - 연 평균소득은 가입자가 정상퇴직연령 도달 전 전체 근로경력 중 최고소득 5년 동안의 가입자 적용소득에 기초함
 - 주당 연금액은 연간 금액을 52로 나누어 결정됨
 - 최저 장애연금액 : 주당 EC\$70
 - 최대 장애연금액 :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60%
 - 급여지급 주기 : 국가보험위원회에서 지급 주기 결정(현재는 월단위 지급)
 - 급여조정 : 보험계리 심사를 조건으로, 3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 50주 당 가입자의 주 평균 가입소득의 6배씩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주 평균소득은 장애 발생 전 최종 50주 동안의 가입자 적용소득에 기초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배우자연금
 - 사망 시점에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장애연금의 75%를 유족 배우자에게 지급
 - 피부양 자녀가 없는 55세 미만 유족배우자 또는 장애가 있는 55세 미만 유족배우자에게는 1년 동안 연금 지급
 - 최저 배우자연금 : 주당 EC\$52.50
 - 최고 배우자연금 : 제한 없음
 - 고아연금
 - 수급가능 자녀 1인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장애연금의 25%(완전고아인 경우 50%) 지급
 - 최저 고아연금 : 주당 EC\$17.50(완전고아인 경우 EC\$35)
 - 최고 고아연금 : 제한없음
 - 피부양 부모연금
 - 다른 수급 가능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장애연금의 최대 50%를 수급자격이 있는 피부양 부모 각각에게 지급
 - 최저 부양부모연금 : EC\$35

- 최고 부양부모연금 : 제한없음
- 유족연금 합산 상한은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장애연금의 100%
- 급여지급 주기 : 국가보험위원회에서 지급 주기 결정(현재는 월단위 지급)
- 급여조정 : 보험계리 심사 권고를 조건으로, 3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족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일시금/장애일시금의 75%를 유족배우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고아인 경우 25%(완전고아는 50%)
 - 다른 수급 가능 유족이 없는 경우 피부양 부모 각각에게 50% 지급
 - 유족일시금 합산 상한액은 사망자가 수급했던 또는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일시금/장애일시금의 100%임
- 장제비(사회보험)
 - 가입자의 전체 또는 일부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EC\$4,525 일시금 지급
 - 배우자 장례에 대해서는 EC\$2,262.50 지급
 - 자녀 장례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에 따라 최대 EC\$2,262.50 지급
- 장제비(사회부조)
 - 비기여노령연금 수급자의 전체 또는 일부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EC\$2,262.50 일시금 지급
 - 가입자 배우자의 장례에 대해서는 EC\$1,131.25 지급
 - 가입자 자녀의 장례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에 따라 최대 EC\$1,131.25 지급
 - 급여조정 : 보험계리 심사 권고를 조건으로, 3년마다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국가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Board)

- <http://www.nissvg.org>
-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